

어장정화·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사업장	상호(명칭)	업종	
	주사업장소재지	전화번호	
	등록번호	등록연월일	
변경등록내용			

「어장관리법」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·정비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. 선박원부 4. 선박검사증서(「어장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이 「선박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